

옥동 경남아너스빌 ubc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 공급 내역

구분	내용
공급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651-2번지 일원
공급규모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20층 5개동 총 320세대, 정당계약 및 예비입주자 계약 이후 잔여물량 세대 (98/100B타입)

※ 잔여 동·호수는 청약 전 견본주택에서 공개  
※ 입주예정일 : 2026년 08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통보함)

■ 청약 및 계약 주요일정

구분	청약접수	추첨 및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일정	2023.01.12.(목) 09:00 ~ 09:30	2023.01.12.(목) 09:30	2023.01.12.(목) 09:30 ~ 10:00	• 당첨자 및 동·호 배정은 사업주체가 정한 공정한 방법으로 진행함 • 당첨자에 대하여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일정 내 미방문 시 계약 체결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예비입주자는 별도 선정하지 않음
방법 및 장소	당사 견본주택 방문진행 (울산광역시 중구 학산동 47-18번지)			
구비서류	자격검증서류 및 계약체결 서류 일체 (서류미비 시 청약접수 및 계약체결 절대불가) ※ 모든 서류는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3.01.12.)이후 발행분에 한함.			

■ 청약신청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3.01.12.)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단, 외국인은 청약 불가]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청약신청금은 없음.  
(본인 및 세대원 중 공고일 현재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본 주택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음)

-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비규제지역에 적용)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급하므로 제23조제2항에 따라「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됨.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애에 직접 중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청약신청 제한

- 동 주택(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
- 동 주택(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2022.12.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됨.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1인 1건만 청약 가능하며, 1인이 2건 이상 청약하면 모두 무효 처리함.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2.12.0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신청 시 기재하는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로 당첨자를 확인하오니 인적사항 기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적사항 오류 등으로 인해 당첨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부동산거래 신고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고,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계약 시 구비서류는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1.12.)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 바람.